

관련 입법 움직임, 어떤 게 있나

여야의원, 관련법 잇달아 발의
 학교도서관진흥법 · 청소년독서진흥법 입법,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통한 ‘기부금 세제혜택’ 방안도

독서교육의 중심이 변하고 있다. 과외 활동으로 철저하게 사적 영역이었던 독서가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면서 학교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폭넓은 독서를 통한 지식 습득이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지식 형성의 가장 중요한 경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국회 차원에서 ‘청소년과 도서관(독서환경)’을 중심으로 독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처음엔 도서목록을 만들고 수능과 연계시킴으로써 동기를 유발하는 데에 입법 취지를 두었다. 하지만 정신적 문화적 실천인 독서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에 부딪히면서 독서 관련법안은 독서환경의 개선으로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정보교육, 독서교육의 요람인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나아가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도 학교도서관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관련해 입법을 추진중인 법안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청소년독서진흥법안’ (가칭), ‘학교도서관진흥법안’ 등이 있다.

■ 학교도서관진흥법은 지난해 7월 열린우리당 김재운 의원이 발의했다. 이는 “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정상적 운영과 공교육의 내실화, 학생 및 지역사회의 질 높은 문화생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학교도서관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가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경비를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면, 교육감이 이에 대응하는 자체 경비를 마련, 투자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도서관이 시설만 해놓고 활용되

지 않는 실태를 감안해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배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관련 단체의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사서 중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는 12조2항이다. 그동안 학교 내 도서관 운동을 해온 시민단체와 전교조, 학부모 등은 기본적으로 임시직이나 계약직 형태로 고용된 행정직 ‘사서’가 아니라 교원자격증을 가진 교무과 소속의 ‘사서교사’가 도서관을 관리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신분적으로 불안정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법적 권한이 없는 사서가 도서관을 운영할 경우 독서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교육부 및 사서단체와 마찰을 빚었으나 1년여 간의 의견조율과 협의를 통해 현재 도서관협회가 양측의 의견이 수렴된 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 안에 따르면 일단 법적으로는 ‘사서교사’로 한정하고 부칙에 유보조항을 뒤, 법시행을 5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사서교사 배치 의무규정이 있고, 시행령에는 배치기준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전국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의 비율은 3퍼센트에 그치고 있다.

■ 청소년독서진흥법은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했다. 청소년들이 지식정보사회에서 꼭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쌓을 수 있도록 더 좋은 독서환경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이 법안 제정의 목적이다. 현재 준비중인 초안에는 △도서관·문고 등 청소년 독서진흥시설 및 설비 확충 △독서자료 확보를 위한 산업체·지역주민과의 협조 방안 △청소년 고용업소의 도서비치 의무화 △장애 청소년 독서활동 장려방안 및 군장병·비학생 청소년을 위한 독서여건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입법 움직임이 줄을 잇고 있다.
사진은 최근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열린 한 세미나 광경.

밖에 독서진흥기금 설치, 청소년 독서의 날 및 청소년 문학상의 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애초 초안에는 독서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우수도서를 식별, 인증하는 방안과 독서전문인력 양성기관, 독서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방안, 그리고 독서인증제를 활용해 학생평가 및 졸업사정, 상급학교 선발, 직원채용의 요소로 적극 권장토록 했다. 하지만 독서인증제가 독서를 교과목으로 편입시켜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자발적 독서를 저해한다는 반대여론에 부딪혀 이 부분을 대거 삭제했다. 대신 독서진흥기금을 만들고 독서전문가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할 계획이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열린우리당 박형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법률 명칭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도서관법'으로 바꾸고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순한 자료보관 및 제공이라는 기능을 넘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학습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만들고, 나아가 정보격차 해소의 장으로서 도서관을 적극 활용하자는 게 목표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법률 명칭을 도서관법으로 변경하는 것부터 시작해 장애인, 어린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도서관의 기능 확대를 통해 내실 있고 실질적인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다. 단,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에 대해 동법의 적용을 받아 지원, 육성이 가능하도록 적용범위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도서관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공공도서관이 보존이 필요한 자료를 이관하기 위하여 지역보존전

문도서관을 설립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외에도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대표 발의)은 지난 8월 22일 도서관 및 문고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성권 의원 측은 "도서관의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만이 아니라 적극적 기부활동을 통한 건립 및 운영 등도 필요하다"며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및 문고'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도서관 및 문고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증진활동을 위하여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따라 도서관 또는 문고에 기부하는 금품에 대해서 과세특례를 부여하여 기부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제73조 제17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따라 도서관 또는 문고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이라는 내용을 신설했다. **한경닷컴**

정리 신동섭 기자